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2. 3.
건설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제 출 자 : 김법기 의원외 7인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1월 15일

○ 회부일자 : 2010년 1월 18일

상정일자 :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10. 1. 25 :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법 기 의원)

제안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
 - 천연가스자동차→저공해 자동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제1항 → 제58조제1항(안 제1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안 제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48조(안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의2호→ 제92조제9호(안 제9조)
- 그 밖에 순화된 용어로 정비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정의는 → 뜻은, 규정에 의한 → 규정에 따라(른), 기타→그 밖에,
교체→전환, 인→명, 또는→이나(나)

3. 검토보고 요지

(건설문화전문위원 길기웅)

-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천연가스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일괄 변경하며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등에 관한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 “뜻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 중 “대폐차라 함은”을 “대폐차란”으로 하고, 제3호 중 “전환이라 함은”을 “전환이란”으로 한다.

1. “저공해연료공급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목·제1항·제6항제1호·제2호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각각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와 법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 중 “법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으로,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저공해 연료공급시설”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천연가스 공급여건”을 “연료 공급여건”으로 한다.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자동차에 대하여”를 “자동차가”로,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84조제1항 단서와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을 “도지사나”로, “교체”를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의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2. 청소차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제8조제2항·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중 “인”,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제4항제1호 중 “또는 ”을 “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6의2호 규정에 의한”을 “법 제9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한다)제36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충청북도 대기 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연가스충전시설”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공급시설(이동식충전시설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대폐차” 라 함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 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환” 이라 함은 경유사용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연료공급시설”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2. “대폐차” 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 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환” 이란 경유사용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제3조(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천연가스자동차중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2. (생략)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p>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및 법 제2조의 16호에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삭제) 			

현행	개정안
<p>제4조(적용 대상지역) <u>법 제36조의2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와 제천시 지역은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시부터 적용 하며 그 외 지역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당해</u>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p>	<p>제4조(적용 대상지역) <u>법 제58조제1항에 따라</u>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와 제천시 지역은 <u>저공해연료 공급시설</u>의 설치시부터 적용 하며 그 외 지역으로서 제3조에 <u>따른</u> 자동차의 등록 및 <u>연료 공급여건</u>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해당</u>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p>
<p>제5조(대상기관 및 전환명령)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u>당해</u>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협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보급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의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전년도 말까지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 전환명령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경우에는 전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제5조(대상기관 및 전환명령) ① 제3조에 <u>따른</u>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u>해당</u>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저공해자동차</u>로 전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u>저공해연료공급시설</u> 설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u>저공해연료공급</u>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u>따른</u> 보급협회의 심의를 거쳐 <u>저공해 자동차</u>로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8조에 <u>따라</u> 수립된 보급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의 <u>저공해자동차</u> 전환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전년도 말까지 <u>저공해자동차</u>로의 전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u>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u> 전환명령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⑤ 제3항에 <u>따라</u> 전환명령을 받은 <u>자동차가</u>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u>제84조제1항 단서와 제3항에 따라</u> 차령을 연장한 경우에는 전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제6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 <u>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제5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u>당해</u>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별·차종별·연식별 보유현황 및 다음연도 대·폐차계획을 당해연도 3월말까지 <u>당해</u>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u>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u>을 작성,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u>확정한</u>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 <u>도지사나</u> 시장·군수는 <u>해당</u> 지역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u>저공해자동차</u>로 조속히 <u>전환</u>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5조제1항에 <u>따른</u>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u>해당</u>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별·차종별·연식별 보유현황 및 다음연도 대·폐차계획을 당해연도 3월말까지 <u>해당</u>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u>따라</u>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u>저공해자동차</u> 보급계획을 작성,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u>확정한</u>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예산의 지원 등) <u>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1. (신설)</p> <p>2. (신설)</p> <p>3. (신설)</p>	<p>제7조(예산의 지원 등) <u>도지사나</u> 시장·군수는 <u>저공해자동차 보급</u>을 촉진하기 위하여 <u>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1.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에 <u>따른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u></p> <p>2. <u>청소차</u></p> <p>3. <u>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u></p>

현행	개정안
<p>제8조(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운영)</p> <p>①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u>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u>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u>1인</u>을 포함하여 위원 <u>9인</u>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u>2인</u> 이내</p> <p>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u>4인</u> 이내</p> <p>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2인</u> 이내</p> <p>⑤ ~ ⑥ (생략)</p> <p>1. <u>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u>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에 관한 사항</u></p> <p>3. <u>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u></p>	<p>제8조(천연가스자동차 <u>저공해자동차</u> 보급협의회 구성·운영)</p> <p>①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u>저공해자동차 보급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u>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u>1명</u>을 포함하여 위원 <u>9명</u>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 <u>이나</u>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공무원 <u>이나</u> 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u>이나</u> 과장급 <u>2명</u> 이내</p> <p>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u>4명</u> 이내</p> <p>3. <u>그 밖에</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2명</u> 이내</p> <p>⑤ ~ ⑥ (생략)</p> <p>1. <u>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u>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에 관한 사항</u></p> <p>3. (삭제)</p>
<p>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u>대기환경보전법</u>」 제57조제6의2호 규정에 의한 전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p>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u>법 제92조제9호에 따른</u> 전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별표]

명령서번호	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			
제 호				
소 유 자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명 령 사 항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연 식)	
	최초등록일		차령만료일	
	전환기한	년 월 일까지		
	비 고			
<p>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및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 군수 (인)</p>				

관련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

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11. 제63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11.28] [대통령령 제21854호, 2009.11.27, 일부개정]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2호, 2009.6.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率)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